

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16. 3. 1. 개정 2016. 12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 소속 여대생의 체계적인 진로개발과 취업준비 교육을 위한 대경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본 센터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

1. 여대생의 취업과 진로개발
2. 여대생의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<개정 2016.12.23.>
3. 여대생을 위한 특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
4. 삭제 <2016.12.23.>
5. 여대생 취업정보의 체계화 및 효율적 제공
6. 기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 부수되는 사항 <신설 2016.12.23.>

제3조(조직) ①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대생커리어개발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센터 규정의 개정
3. 정부지원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교비, 국고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6조(기타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.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